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
3. 용산공원 조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5. 국민참여 방안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조성관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산공원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겸임한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④ 기획단에는 공원정책과, 공원운영과 및 기획지원과를 둔다.

- ⑤ 공원정책과장, 공원운영과장 및 기획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⑦ 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산공원 조성관련 업무의 총괄
2. 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조성·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분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5. 국회 및 예결산 등 업무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등에 관한 사항
8. 추진단 인사·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재부지(유엔사, 캠프킴, 수송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용산기지 반환 관련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임시개방부지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4. 용산기지 반환 관련 펜스 공사에 관한 사항
5.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오염정화 관련 기초 조사 등 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임시개방 관련 타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 추진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4.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항
5. 추진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국대사관 숙소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7. 舊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과견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직원의 과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2023. 1.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제3조제7항 관련)

구 분	고위 공무원단	4급	5급	6급 이하	계
단 장	1				1
공원정책과		1	4	3	8
공원운영과		1	4	2	7
기획지원과		1	3	2	6
합 계	1	3	11	7	22